

『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공무원 출장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 요구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비 제도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숙박비 현실화를 통해 출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 준용(별표1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불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공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정액제에서 실비정산제로 조정하는 등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」[별표1]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을 반영하고, 여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상위 법령인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범위에서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맞추어 여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여비집행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여비 지급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